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60
----------	-----

2022. 2. 10.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 28. 강남구청장

나. 상정의결

- 제3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2. 2. 10.)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운영절차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행업체 평가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1회’로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 대행업체의 혼란을 줄이고, 이의신청기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9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8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문성)

1 조례안의 취지

- 강남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청소관련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위원회로 하여금 업체가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지를 평가원칙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중앙정부기관인 중소기업음부즈만은 위원회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위원회 규제 부담 경감방안(이하 '위원회 경감방안')'을 내린 바, 조례안은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임.

2 주요 사항 검토

가. 업체에 대한 평가 시기 및 횟수 제한

- 현행 조례는 대행업체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바¹⁾,
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평가(설문조사), ② 주민대표에 의한 수거상태 및 시설에 대한 현장 평가(평가단 현장평가), ③ 행정 담당자에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의한 서류평가(실적서류 평가)²⁾로 구성되어 있음.

-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대행업체의 대행실적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등급화하고(3개 분야 평가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로 평가함), 평가결과를 인센티브 및 페널티(구청장 상패 수여) 부여 등에 활용하고 있음.
- 대행업체 평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평가시기와 횟수를 연간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이하 ‘환경부 적용지침’)」에서는 연간 1회로 명시하고 있음.
- 중소기업음부즈만은 ‘위원회 경감방안’을 통해 ‘민간과의 소통 및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제도가 심의기간 장기화·중복심의 시행 등으로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영상 애로가 가중된다고 밝히면서 심의대상을 최소화하고 심의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내린 바, 집행부는 위 권고를 반영하여 환경부 적용지침에 따라 연간 1회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출하였음.
- 검토하건데 잦은 평가를 시행할 경우, 대행업체의 평가 피로도가 증가하고 불필요한 시간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대행업체 평가횟수를 연1회로 구체화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2. 이의신청 기간 연장

- 조례안은 대행업체인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통지받은 후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음.
- 평가받은 업체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의 행정규칙에서도 이의신청 기간을

2)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2021.4.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기한을 조정한 내용은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3 종합 의견

- 금번 조례안은 중소기업음부즈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 다만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를 통한 관리체계는 직영체계에 비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행정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등 청소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제고라는 목적을 지향해야 함.
- 그러나 기존업체들의 영업권 보장, 직영조직 근로자와 비교되는 열악한 근로조건, 과도한 이익 추구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대행업체를 통한 관리 체계에 대한 일부 여론의 비난이 있어 왔음.
- 앞으로 대행업체가 효과적으로 청소사업을 이행하고 공공사업자로서 책임성 있게 청소조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하겠음.

참고자료

□ 행정동 지번별 관할 청소대행업체 [2020. 1. 1. 字]

연번	행정동	관할 지번	청소대행업체
1	신사동	신사동 501-586 압구정동 397-419, 422-434	하진기업 (1구역)
2	논현1동	논현동 1-58, 120-206	
3	논현2동	논현동 59-119, 207-278	
4	압구정동	신사동 587-665 압구정동 369-396, 437-473	
5	청담동	청담동	로알환경 (7구역)
6	삼성1동	삼성동 52-110, 145-171	
7	삼성2동	삼성동 1-51, 112-144	고려환경 (5구역)
8	대치1동	대치동 산 56, 205-212, 447-508, 598-599, 601-633 645-653, 670, 888, 1013-1019, 1021-1025	하남기업 (2구역)
9	대치2동	대치동 50-75, 316, 509-511, 514, 942-1009	고려환경 (5구역)
10	대치4동	대치동 889-941	하남기업 (2구역)
11	역삼1동	역삼동 601-705, 735-753, 789-799, 808-840	성진미화 (4구역)
12	역삼2동	역삼동 706-734, 754-788	하남기업 (2구역)
13	도곡1동	도곡동 산 32-56, 149-205, 540-555, 869-965	성진미화 (4구역)
14	도곡2동	도곡동 산 6-25, 산 261-262, 56-146, 410-539	평아용역 (6구역)
15	개포1동	개포동 118-130, 141, 565-660, 산 143-157, 산53-67	
16	개포2동	개포동 108, 131-198, 971, 산 67-1 일원동 691, 700	
17	개포4동	개포동 654-659, 1163-1268	
18	일원본동	일원동 50, 713-739 수서동 산 4, 540-541, 544-595, 605, 608-704, 741-749	평원기업 (3구역)
19	일원1동	일원동 3-6, 9-11, 14, 617-687, 711, 712 수서동 361-363	
20	일원2동	대치동 1-49 / 개포동 산 1-18, 개포동 1~14, 12, 18 일원동 468-478, 580, 614, 615, 589, 690	평아용역 (6구역)
21	수서동	수서동 85, 100~200번지대, 364-370, 400번지대 500-539, 542-543, 596-597, 707-727, 730-741	평원기업 (3구역)
22	세곡동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0
----------	-----

제출연월일 : 2022. 1. 28.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청소행정과

1. 제안이유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운영절차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행업체 평가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1회'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대행업체의 혼란을 줄이고, 이의 신청기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1.12.3. ~'21.12.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 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이상 현장평가,”를 “현장평가,”로 “10일”을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평가의 실시)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제6조에 의한 평가 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u>이상 현장평가</u>,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u>10일</u>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9조(평가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현장평가</u>, ----- ----- ----- ----- ----- ----- ----- <u>30일</u> ----- -----.</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개정으로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환경 미화원 안전기준 신설 및 환경부 지침 변경 등으로 인한 개정 추진으로 비용이 별도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 청소행정과 행정7급 성명 정명주(02-3423-5974)